

업무협조약정

2011. 6. 13

해외건설협회 한국국제협력단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국제협력단간 업무협조약정

해외건설협회(이하 "해건협")와 한국국제협력단(이하 "협력단")은 대외 무상 개발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협조약정(이하 "약정")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

본 약정은 해건협과 협력단이 대개도국 무상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내용 및 범위)

해건협과 협력단은 다음 항목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며, 구체 이행을 위한 각 항목별 세부 사항과 조건 등은 필요시 별도로 협의한다.

- ① 해외건설 관련 프로젝트 사업, 국내초청 연수 사업 등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사업의 발굴·시행 및 평가
- ② 개도국에 대한 각종 개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 또는 위탁연구
- ③ 국내외 조직망 및 관련 정보의 공유
- ④ 양 기관 간행물에 대한 정보 게재 및 활동 홍보
- ⑤ 각 항목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내 시설(회의실, 강의실, 숙박 시설 등)에 대한 상호활용
- ⑥ 기타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 3 조 (업무협의를)

해건협과 협력단은 본 약정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 기관 중 한 곳의 제안에 의하여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호 업무협의를 책임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 4 조 (경비사용)

본 약정에서 규정한 협력내용 수행 시 발생하는 제경비의 지출 및 정산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5 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 서면동의 없이는 본 협정과 관련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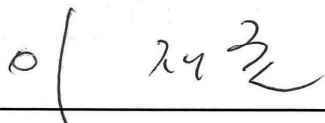
제 6 조 (시행약정)

양 기관은 약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한 업무협조 내용의 상세한 범위, 방법, 절차 및 권리의무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 7 조 (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)


- ① 본 약정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②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약정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- ③ 본 약정의 증명을 위해 약정서를 2부 작성,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6월 13일



해외건설협회

회장 이재균



한국국제협력단

이사장 박대원